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서초구청
----------	------

제출년월일 : 2001. 8.

제출자 : 서초구청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으로서 기반시설인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이 불가피하나, 일시에 많은 예산의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이용에 따른 행정편의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 (안 제3조)
- 나. 기금은 서울특별시서초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매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다. 기금의 용도는 청사건립부지 매입 및 청사건립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타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5조, 제14조)
- 라.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내지 제13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2001. 7. 20. ~ 8. 8.) 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용 청사”라 함은 공적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직접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구의회의사당, 구청사, 동청사, 보건소 등을 말한다.
2. “공공용 청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공공사용에 제공하는 시설로서 구민회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센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서초구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서초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등 기타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초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 부지 매입
2.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
3. 기타 구청장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방재정법의 준용)**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에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생활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10조(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서초구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의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 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대지, 건물 규모)
3. 사업시기 결정
4.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위원회의 자문에 의하여 구청장 책임하에 운용 ·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기금의 운용 ·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
2. 다음 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